

# 목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2년 8월 5일
- 나. 제출자 : 목포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2년 9월 3일
- 라. 상정일자 : 2002년 9월 4일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제안설명

-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(제1차) : 상수도사업소장 장 의 승
- 기획총무위원회 : 수도시설과장 이 민 술

### 나. 제안이유

- 수도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원인자 부담금 관련법 개정으로 수도사업자로서 시설 용수확장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일단의 대지를 조성하는 시설물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함.

### 다. 주요내용

-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
- 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공사 소요사업비(127,300백만원)에 전체시설용량(263,000 m<sup>3</sup>/일)을 넘는 금액의 천원 단위인 484천원/m<sup>3</sup>에 부과대상의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 단위 금액.

### ○ 부과대상

- 주거시설 :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- 숙박시설 : 건축연면적 600m<sup>2</sup>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.

- 교육시설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설.
- 의료시설 : 건축연면적 2,000㎡이상
- 판매유통시설 : 건축연면적 2,000㎡이상
- 기타시설 : 건축연면적 2,000㎡이상
- 토지구획 정리사업 : 택지개발, 공업용지 조성등 대단위사업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### 4. 위원회 활동

-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(2002. 9. 4)
  -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-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회의(2002. 9. 5)
  - 안전검토
- 제217회 목포시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회의(2002. 9. 9)
  - 안전검토 및 심사

### 5. 토론요지

- 2002년 현재 우리시 수돗물 생산능력은 145,000t이나 목포시 수도정비 기본사업 계획연도인 2016년에는 급수인구가 482,000명으로 증가되어 1일 263,000t의 물이 필요하게 되므로 118,000㎡의 급수시설 용량확장을 하게 되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.
-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수돗물이 대량으로 소요되는 시설물에 취수·정수시설과 수도관로 등의 신·증설 비용을 시설 용수 확장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53조(원인자 부담금)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음.
- 본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제정시는 부과대상 중 교육시설, 주거시설 등의 부분에 대해서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부과에 차질이 없어야겠음.

- 개정조례안대로 원인자부담금이 새로이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된다면 영세민들의 임대료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
-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중 “주거시설”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, “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되 다만 15평미만 임대주택”은 제외한다로 『수정가결』 하였음.

## 6. 심사결과

### 【 수정 가 결 】

#### ○ 수정내용

-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의 (원인자 부담금)의 “주거시설”=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	제12조의 (원인자 부담금)의 “주거시설”=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15평미만 임대주택은 제외